

홈앤복지재가센터 운영규정개요

I.기관 기본정보

기관명	홈앤복지재가센터	대표	강한구
설치일자	2018.05.14.	급여종류	재가급여:방문요양.방문목욕
소재지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98, B110호 (아탑동, 아델파크빌)		
전화	031-701-3308	팩스	0504-036-1974
이용대상	만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대상자 어르신 등		

II.종사자 현황

총원	시설장(관리책임자)	사회복지사	요양보호사
37	1	1	35

III.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이용정원: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아니한다.
2. 이용자모집방법

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, 기관 홈페이지, 생활정보지, 기관 블로거, 대상자 방문상담,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IV.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의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(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)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2. 계약기간

- 1)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한다.
- 2) 계약기간 중 입원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.
- 3)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.

V.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, 급여비용 등에 관한 사항

1. 서비스 내용

구분	서비스내용
방문요양서비스	가. 신체활동지원: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,개인위생활동(세수,양치,머리감기,목욕 등) 몸단장(머리손질, 손.발톱정리, 옷 갈아입기 등) 체위변경, 이동도움, 배설도움(화장실 이동변기 이용, 기저귀 교체 등)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나. 인지활동지원: 회상훈련, 기억력 향상활동,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.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(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, 요리하기 등) 다. 일상생활지원: 외출동행(장보기, 산책, 물품구매, 병원 이용 등)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, 수급자의 빨래, 식사준비, 설거지 등 *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라. 정서지원: 말벗, 의사소통 도움 등
방문목욕서비스	목욕준비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 말리기,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
부당한 업무	●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●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● 장기요양5등급(치매특별등급)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, 정서 및 가사지원(빨래,식사준비 등)을 요구하는 행위 ●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등

2. 장기요양 급여 및 월 이용료, 그 밖의 비용부담액

2026년 장기요양 월 한도액 및 시간당수가					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구분	급여제공시간		금액(원)	본인부담금			
				일반대상자 (15%)	40%감경	60%감경 (기타의료 수급권자)	기초수급자
방문 요양	30분 이상		17,450	2,620	1,570	1,050	0
	60분 이상		25,320	3,800	2,280	1,520	0
	90분 이상		34,120	5,120	3,070	2,050	0
	120분 이상		43,430	6,510	3,910	2,160	0
	150분 이상		50,640	7,600	4,560	3,040	0
	180분 이상		57,020	8,550	5,130	3,420	0
	210분 이상		63,530	9,530	5,720	3,810	0
	240분 이상		40,080	10,510	6,310	4,200	0
방문 목욕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	차량 내 목욕	88,990	13,350	8,010	5,340	0%
		가정 내 목욕	80,230	12,030	7,220	4,810	0%
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	50,100	7,520	4,510	3,010	0%

Ⅵ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1. 신원인수인 권리

- 1)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- 2)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- 3)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
- 4)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1)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부담하여야 한다(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.)

단,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,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.

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.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,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.

2)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 파손,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.

3)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

(해외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)

4)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5)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(수급자의 사망, 시설입소, 타 지역 이사_거주지 변경_ 병원입원_ 해외출국)가 아닌 한,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.

Ⅶ. 계약의 해제

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

해지 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,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2. '갑'(또는 '병')이 종사자에게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시,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3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4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5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6.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7.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8.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VIII.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

1. 해당요건
 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, 급여내용,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 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 - 3)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
(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)
 - 4)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
2. 변경 방법 및 절차
 - 1) 신규 및 갱신계약 → 계약자 상담 →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→ 급여계획 통보 → 서비스 실시
 - 2)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→ 변경내용 안내 →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→ 급여계획 통보 → 서비스 실시

IX. 보험가입여부

보험종류	보험사	보험내용	보험기간
배상책임보험	현대해상화재보험	요양보호사 업무 중 수급자 상해 등(대인·대물 보상)	2026.01.23.~2027.01.23